의안번호	2206585
의 뢰 인	서영교의원
회 답 일	2024.12.24.
추계번호	24D5988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신설	국회의장은 전쟁, 폭동, 계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음(제1항)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음(제4항)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함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음(제5항)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(제6항)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7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이 전쟁, 폭동, 계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

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
○ 「국회법」은 2020.12.22.~2022.6.30.까지 한시적으로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”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

○ 다만,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,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본회의를 운영한 사례가 없음

❑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출석 및 표결 방식(비전자식 호명 및 거수표결, 전자식 기명 · 무기명 방식의 표결 등)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한 실현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나, 현재 시스템의 기능, 사업비, 구축시기 등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황임

○ 참고로, 2020년 국회 제2회의장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,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. 동 시스템의 경우 Zoom이나 Webex 등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능만 있으며, 본인인증, 출석, 기명·무기명 표결 등의 기능은 부재한 상황임

[표 1] 국회 제2회의장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용(2020년)

(단위: 천원)

구분		산출내역	
화상회의 인프라구축	소계	-	16,036
	화상회의 장비도입	-	10,900
	화상회의 운영PC 및 모니터 구입	PC 4식, 모니터 3식	5,136
운영전담 인건비		1인 3개월	2,000
합계		-	18,036

자료: 국회사무처

❑ 이와 같이 본인인증, 출석, 기명·무기명 표결 등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방안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의 어려움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Ⅳ. 부대의견

❑ 해당사항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